



공정거래위원회

공정거래법 개정(안) 주요내용

2004. 5. 3

공정거래위원회

目 次

I.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배경 /1

II. 공정거래법 개정(안) 주요내용 /2

< '04년 신규추진 주요과제 > /2

1.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/2
2.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 허용범위 단계적 축소 /3
3. 비상장·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/3
4. 지주회사제도 추가보완 /3
5. 기타 /3

< '03년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주요과제 > /4

1.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 /4
2. 지주회사제도 보완 /4
3.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 /5
4.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 /5
5.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규정 보완 /5
6. 기타 /5

I.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배경

- 지난해 12.30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거쳐 참여정부의 시장, 기업 및 기업집단에 관한 정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「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」을 정부안으로 확정
 - 시장개혁의 목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
 - 이를 위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,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경쟁의 제고 방안을 마련
- 시장개혁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
- 「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」상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개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. 6부터 관계부처 협의중
 - '04년 신규추진 주요과제 :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, 계열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 허용범위 축소, 비상장·비등록 기업의 공시 의무 강화, 지주회사제도 추가보완
 - '03년 국회에 제출한 주요과제 :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연장, 지주회사제도 보완,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,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,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한도 상향조정
-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「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」에 따라 시장자율감시체제가 확립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시강화 등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
 -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내부건제시스템 구축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은 언제라도 졸업할 수 있도록 함
- 5. 7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6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임

II. 공정거래법 개정(안)의 주요내용

< '04년 신규추진 주요과제 >

1. 출자총액제한제도(타회사 주식보유한도제)의 합리적 개선

☐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졸업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

- 이사의 선임방법,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방법,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등 내부건제장치를 갖춘 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

* 로드맵상 예시 :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 도입 및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기업

- 현재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를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까지 확대

-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계열회사수가 일정수 이하인 기업집단

* 로드맵상 예시 : 계열사간 3단계이상 출자가 없고 계열회사수가 5개이하

-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

※ 구체적인 졸업요건은 로드맵상 예시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규정

☐ 상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'03.3월말로 시한만료된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해 예외를 인정

* 예 : 현물출자·영업양도, 물적분할, 분사(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규정)

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의 예외인정이 지배력 확장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

2.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 허용범위 단계적 축소

- 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피해차단을 위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

3. 비상장·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

- 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·비등록 회사에 대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

○ 신설 공시사항

- 최대주주·주요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
- 영업양·수도, 회사의 합병 및 분할, 주식의 교환·이전
-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 또는 주식의 취득 등

4. 지주회사제도 보완

- ☐ 규제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지주회사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5%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

*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5%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

- 단,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외 국내회사 주식을 5%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간의 처분유예기간 인정

- ☐ 금융(일반) 지주회사의 비금융(금융) 회사 주식소유 금지와 관련하여 2년간의 주식처분 유예기간을 인정

5. 기타

- ☐ 부당한 공동행위를 교사한 사업자에 대한 법적용근거 마련
- ☐ 기업집단지정시 자산총액 70억원이하인 회사중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휴업중인 회사에 대해 감사보고서 제출 면제

< '03년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주요과제 >

1.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제도입(지난해에는 3년 시한연장으로 추진)

- 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(현재 51개) 소속회사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'04.2.4일로 시한만료
- ☐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없이는 금융계열사 등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가 어려우므로 3년 시한으로 동 요구권을 제도입

* 그간 확인된 부당내부거래의 87%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졌음

2. 지주회사제도 보완

- ☐ 지주회사 설립·전환을 쉽게하기 위한 사항
 - 부채비율(100%)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연장(현행 1년 → 2년)
 - 지주회사로의 전환유형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유예기간을 모든 유형에 대해 인정
 - * 현재 현물출자, 회사의 분할·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, 자회사의 주식가액 증가에 대해서만 인정 → 주식교환·이전방식 등 모든 유형 포함
 - 손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처분유예기간을 새로이 인정(2년)
 - 비상장 합작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(현행 50% → 30%)
- ☐ 지주회사체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항
 -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
 -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신설(비상장 50%, 상장 30%)

3.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

- ☐ 독과점적 폐해의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한 효율적 심사를 위한 사항
 - 심사연장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(최초 30일 포함시 총 120일)
 - 1차 신고 후 추가지분 취득으로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신고 의무화
- ☐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제한적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사항
 - 현재 사후신고 대상인 **대규모회사**(자산규모 2조원이상)의 주식취득을 기업결합 완료전 신고로 전환
 - 피취득회사의 규모가 **소규모**(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억원) 이하일 경우 신고의무 면제

4.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

- 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가 소제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**시정조치 전치주의 조항을 삭제**
- ☐ 관련증거, 변론취지 등을 감안하여 법원이 **손해액을 인정**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설

5.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규정 보완

- ☐ 과징금 최고한도 인상(현행 매출액의 5%, 10억 → 10%, 20억)

6. 기타

- ☐ 위원회 심의·의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
- ☐ 조사권 남용금지 및 조사연기신청 조항을 신설